

# 식품 산업과 APEC

신 성 균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식품위생연구부

## 1. 서 언

오늘날 세계는 정보 통신의 혁신과 더불어 무역 장벽의 완화를 통하여 사실상의 무국경 지구 경제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식품 산업 관련 분야에도 세계주의의 산물라고 할 수 있는 UR이 타결되고, WTO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무역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찍부터 지역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한 EU, NAFTA 등은 무역의 장벽이 없어져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WTO 등의 국제 무대에서 이들 지역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의견 결정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 블록들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무역시 상대적인 배타성이 발생하게 되어 가능한한 APEC과 WTO와 같은 경제 블록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와 태평양 주변 국가들로 이루어졌으며, 타 지역 경제 블록들과 같이 지역 국가간의 무역을 자유화하며, WTO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WTO의 중요도가 증가할수록 APEC의 중요도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의 영향력도 매우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PEC과 식품 산업의 관계에 대하여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PEC의 전반적인 개요와 식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국제 규격과의 일치'와 '적합성 판정의 상호 인정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및 식품전문가회의 (Sub-Committee on Standard and Conformance Expert Meeting on Mutual Recognition [Food Products])의 대한 목적, 지침 및 활동 상황 등을 식품 산업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 2. APEC의 개요

### 가. APEC의 역사와 회원국

APEC은 1989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만을 중점으로 논의

하여, 지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자간 무역의 강점을 살려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발의되어, 호주의 캔버라에서 그해 11월에 첫 모임이 열렸으며, 그후 싱가포르, 서울, 방콕, 시에틀, 보고르, 오사카, 마닐라 등에서 회의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APEC 회원국은 우리 나라 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으로 총 18개국이며, 3개의 옵서버(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남태평양 포럼)가 인정되어 있다.

APEC은 선진 공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202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 계획을 확대하고 가속화시키며, 회원국간의 개별 협력의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분야”와 “경제 및 기술 협력 분야”로 나누어 작업하고 있다.

#### 나.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는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동 정책, 협력 사업 및 정책 대화를 통하여 회원국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의 경제, 사회, 복지 개선 및 지역 내의 시장 경제가 원활히 작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작업한다. 이 위원회에서 작업하는 내용으로는 교육과 원활한 접촉을 통한 인적의 자원 개발, APEC Technomart의 개최, 공동 연구, 및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통한 산업 과학 및 기술의 향상, 수요의 다양성 및 기술 혁신에 신속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실시, 전반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분석 및 개선 활동,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투자 등, 효율적이고 통합된 안전한 수송 대책의 마련, 국내외를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 관광의 투자 장벽의 제거

및 관련 서비스의 교역의 자유화, 국제 표준을 이용한 무역 및 투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무역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무역 진흥 조치, 해양 자원 보존 및 해양 상품의 교역의 활성화, 어업 자원의 적절한 보호 육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용 촉진, 수산물 가공에 위해분석 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이용 장려, 농업 기술의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 다. 무역 및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① 기본 원칙

식품 산업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무역 및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분야를 다루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9가지의 기본 원칙을 통하여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한다. 첫 번째 원칙은 포괄성(Comprehensiveness)으로 APEC내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롭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괄적이며,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WTO와의 일치성(WTO-Consistency)으로 APEC의 행동 지침 및 각국의 교역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모든 조치는 WTO의 조치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형평성(Comparability)으로 각 회원국은 각국이 이미 달성한 무역의 자유화 및 원활화 수준과 경제 발전의 수준을 고려하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회원국간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인 무차별성(Non-Discrimination)은 각 회원국은 회원국 양국간 또는 여러 국가간에 차별을 두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결과로서 APEC 회원국간 무역 장애의 실질적인 축소뿐만 아니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실질적인 무역 장벽 축소를 이루어야 하

는 것이다. 투명성 (Transparency) 원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간의 상품, 서비스와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법규, 규칙 및 행정절차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 동결(Standstill) 원칙은 각 회원국에서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 수준을 보다 높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롭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동시 착수, 지속적 추진 및 차별적인 시간 계획에 대한 원칙 (Simultaneous Start, Continuous Process and Differentiated Time Tables)은 상호 무역이 자유롭고 원활히 되도록 협력의 과정을 각국에서 동시에, 지체없이 시작하며, 이를 통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장기 목표 실현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축성 (Flexibility) 원칙은 자유화 및 원활화 과정에 있어, 회원국의 경제 발전 수준 및 다양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취급하는데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협력 (Cooperation)의 원칙은 지역 내의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하는 각국간의 경제와 기술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다.

### ② 작업 순서

각 회원국의 자유화 추진을 위한 일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각 회원국은 오사카의 비공식 정상회담 직후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후진국의 경우 2020년까지 무역의 자유화 및 원활화 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Action Plan)”을 1996년내에 작성 완료한다. 작성된 행동 계획은 회원국간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의 과정을 거친 후, APEC 각료 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1997년 1월부터 전반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다. 행동 계획은 실천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한다.

### ③ 세부 분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위원회는 일반 원칙을 기초로 구체적인 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15

개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한 목적, 지침 및 취하여야 할 조치를 설정하였으며, 각 분야별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침과 조치에 대한 세부 논의를 하고 있다.

관세 소위원회의 경우 관세 인하와 관세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관세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관세 인하 조치 등을 한다. 수출입의 수량 또는 차별 대우 등을 이용한 제재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다루는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비관세 조치에 대한 정보를 관세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시키며, 조기 자유화 이행에 대한 산업계의 지지가 있는 산업을 확인하고, 수출 보조금의 폐지와 부당한 수출 금지 등의 규제 철폐에 대한 논의를 한다. 서비스 소위원회는 각국의 서비스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며,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각국간에 최혜국 대우를 하고 차후에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목적 하에 통신, 수송, 에너지 및 관광 분야에 대한 공동 조치를 위한 토론을 한다. 투자 소위원회에서는 투자 환경의 자유화,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한 기업 활동의 원활화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식품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표준과 적합성 판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는 ‘APEC의 표준과 적합성의 기본 구조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APEC Standards and Conformance Framework)’과 WTO의 ‘기술 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및 ‘위생과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표준 및 적합성 평가의 투명성 (Transparency)을 확보하고, 강제적 및 자발적인 국내 규격 기준을 국제 표준과 일치 시키며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PEC 회원국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상호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n the Conformity Assessment)을 체결하며, 상호인정협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에서는 사회 간접 자본 개발을 통한 협력을 증

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관 절차 소위원회는 세관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 소위원회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 집행에 대한 논의를 한다. 경쟁 정책 소위원회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자와 판매인들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정부조달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행, 정책, 체계에 대한 공통의 작업 계획을 확립한다. 규제 완화 소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규제 체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방해하는 필요 이상의 규제 조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토의를 한다. 원산지 규정 소위원회는 국제 기구의 조화된 원산지 규정의 이행과 각국의 투명하고 공정한 원산지 규정의 마련과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한다. 분쟁 조정 소위원회는 WTO 협정과 다른 국제 협정 기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회원국간의 분쟁을 초기에 해결하도록 협력한다. 경제 인사들의 교류를 소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교류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UR 협상 결과의 이행 소위원회는 UR협상의 결과에 대한 이행에 도움을 주며, 이를 보장한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분야는 각 특정 분야의 작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의 확인을 한다. 각 소위원회는 무역 및 투자 위원회에 그 진행 결과를 보고하며, 그 통제를 받는다.

### 3.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 가. 개괄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 (SCSC)는 무역 및 투자 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식품 전문가 회의의 상위 위원회로 식품 산업을 포함

하는 모든 제조업의 국제 규격과의 일치, 상호인정협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며, 의장국은 필리핀이다.

#### 나. 지침

이 소위원회는 앞에서 설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식품 표시 제도 외에 전기전자기구,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고, 1996년 말까지 국제 규격과의 일치 대상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분야별 행동 계획을 1997년 말까지 개발하며, 코덱스 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등의 국제 표준 기구의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또한 규제 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의 개발에 대하여서는 1997년까지 식품 표시와 장난감 등의 사례 연구를 완성하며, 복수간의 협정의 기반을 제공할 다자 분야 및 양자 분야의 상호 인정협정의 개발과 더불어 2005년까지 미터 조약과 OIML 조약(La Convention Instituant Un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erologie Legale) 참여를 검토한다.

#### 다. 주요 활동

이러한 지침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조치는 네 개의 분야로 나누어 행동을 취하고 있다. 국제 규격과의 일치 (주: “일치 alignment”의 개념은 WTO의 “조화 harmonization”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WTO의 TBT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한다는 개념이나, 아직도 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는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 표시를 포함하는 4가지 분야 이외에 1996년도 까지 몇 가지 국제 규격과 일치에 대한 추가 분야를 선정후 작업을 시작하고, 2000년과 2005년에 이의 진척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1996년 5월말까지 제안된 추가 우선 분야에는 호주 등의 국가에

서 제안한 식품의 유통 기한 외에도 여러 가지 식품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의 식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인 적합성 평가의 상호 인정의 경우는 1996년도 까지 상호 인정을 위한 추가 우선 분야 선정하여 그 작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식품은 선도 분야로 이미 선정되어 식품전문가회의를 만들고 이에 위임하여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에 그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식품전문가회의에 대하여서는 후에 상세히 논의하겠다. 이외에 아시아 태평양 실험실 인정 협회, 아시아 태평양 법적 도량형 포럼, 아시아 태평양 도량형 프로그램, 태평양 인정 협력, 태평양 지역 표준 회의와 같은 지역 전문기구에 협력을 하며, 자발적 분야에서 상호 인정 네트워크 설치와 선진국은 2000년까지, 개도국은 2005년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또한 가장 규제된 분야에서, 분야별로 상호 인정 협정 네트워크 설치를 위해 노력하며, 이는 시험 결과의 상호 수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종류의 적합성 평가를 상호 인정하며, 이 협정에 대하여 관련 있는 각국의 체제를 검토한다. 적합성 평가의 상호 인정 외에 기술 분야에서의 사회 간접 자본 개발과 관련한 협력과 투명성에 대한 조치가 있다. 투명성의 경우 회원국의 표준 및 적합성 판정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 정도, 그 정보의 사용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정보 교환 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1996년까지 조사를 완료하며, 선진국의 경우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10년까지 표준 및 적합 시스템, 테스트 기구, 측정 기구, 자격 인정 및 등록 기구, 승인 기구의 실태, 상호 인정협정 실태, 회원국의 표준의 국제 표준과의 일치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 라. 식품 관련 주요 토의 내용

현재 이 소위원회에서 토의되고 있는 주요 논제와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제 규격과의 일치에 있어서의 주요 작업국은 일본으로 사례 연구 발표, 일치를 위한 지침 개발 및 추가 일치 우선 분야 선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추가 우선 분야 일치 선정 절차는 각 회원국에서 제안을 하고 이를 일본 (작업의장국)에서 취합하여 회의 전에 회원국에 제출하면,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취합하여 회의시 토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품목 또는 규격으로 정한다. 일치를 위하여 제품 또는 제도 등의 규격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 회원국은 수출입 입장에서본 회원국의 관심도, APEC 지역 내의 무역량, 국제 규격과의 일치에 의한 무역 비용의 절감 또는 무역의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합성 판정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주요 작업국은 호주로 현재 식품의 경우는 식품전문가회의에 위임하고 있으며, 기타 장난감, 자동차 및 자발적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또한 추가 상호 인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천된 추가 상호 인정 분야 중 식품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전문가회의에 위임하였다.

또한, 공동 발전을 위한 발전의 동반자 작업도 이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제 규격 등의 절차, 연수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 기구와의 협력도 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WTO/TBT와 SPS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국제 기구내의 지역 전문가 기구와도 교육 등을 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등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각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곧 보고할 예정이며, 이때 투명성 향상에 대한 의견도 제출될 전망이다.

#### 4. 식품전문가회의 (Sub-Committee on Standard and Conformance Expert Meeting on Mutual Recognition (Food Products))

##### 가. 개괄

식품전문가회의는 식품의 상호 인정 협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에서 식품에 관련된 상호인정협정을 토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의장국은 호주이다. 이 전문가 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식품상호인정 제도와 함께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에서 위임된 식품과 관련한 상호인정제도와 식품회수제도 등이 있다.

#### 나. 주요 활동

상호인정제도의 작업 진전을 보면 현재 모든 식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지침 성격의 협정문이 기본 골격을 갖춘 상태이며, 이 일반 협정문에 부속될 개별 품목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일반 협정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의무, 감시, 개별 품목을 위한 부속서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 각국의 주무부서의 역할, 정보 교환 방법, 타국과의 협의, 조정 위원회 및 발효 등이 있다. 개별 품목의 선정은 과거 연체 수산물이 대상이었으나 폐기하고 다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차 제안 기한인 5월 말까지 4개국만이 가공식품과 식품 원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기간을 7월 초까지 연장하였다. 상호 인정 품목을 추천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국제 규격과의 일치와 유사하게 수출입에서 본 회원국들의 관심도, 무역량, 타국의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기준, 부속서의 작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주요한 논제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10월부터 실시되는 식품 회수 제도에 대한 각국의 실태에 관한 조사 사업을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작업반의 구성 및 각국의 실태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 5. 결론

이상으로 APEC의 전반적인 구조와 식품에 관련된 작업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식품 산업의 경우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와 식품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식품 표시 제도의 코덱스 규격과의 일치로부터 각국의 적합성 판정의 상호인정협정, 식품 회수 제도를 다루고 있다. 적합성 판정의 상호인정협정의 경우 그 부속서의 개발을 위해 어떠한 식품이 우선적으로 선택되건 그 식품의 수출입이 보다 자유로와 질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식품이 예외 없이 상호인정협정의 대상이 되어 식품 무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규격과의 일치 분야에 대하여서는 국내 식품 관련 법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현재와는 많은 법규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식품 업체에서도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6. 참고문헌

1. 오사카 행동지침[The Osaka Action Agenda-Implementation of the Bogor Declaration] (1995.11)
2.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for Action, Osaka, Japan] (1995.11)
3. APEC 1996년 SCSC 및 SC-EMM 회의 자료